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(위탁) 「훈련비 계산서 발행」 안내

□ 훈련 비용 계산서 발행

- 계산서는 1개 과정 기준으로, 훈련비 전액(자부담금+공단지원금)에 대한 계산서 1건이 발행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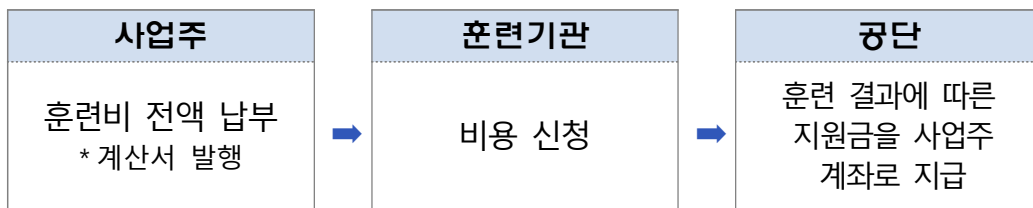
※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훈련 지원금(공단 지원금)을 입금하지 않으나,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,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

□ 훈련비 지원 절차

- 사업주가 먼저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, 훈련기관은 수료 보고 후 비용 신청,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육 결과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주 계좌로 지급

※ 사업주는 반드시 HRD 홈페이지에서 ①계좌 등록을 해야하며, 훈련기관에 ②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함 (계좌 미등록 및 통장 사본 미제출 시 비용 신청 불가)

< 훈련비 지원 절차(위탁) >



□ 계산서 발행일자

- 훈련비 전액을 입금한 날짜 기준으로 전자 계산서(영수) 발행